

체육부운영규정

시행 : 2020.04.09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체육부(이하 “체육부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체육부는 행정실, 스포츠 과학지원단(경기분석실, Athletic Training Center, 심리상담센터)의 행정조직과 체육부장, 행정직원, 각 운동부의 감독, 코치 및 선수의 인적자원으로 구성한다.
② 체육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③ 각 운동부 감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코치는 체육부장 또는 해당 운동부 감독의 추천을 받아 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④ 체육부 소속의 비정규직 지도자 및 비정규직 직원을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, 체육위원회의를 거쳐 인사처에서 발령한다.

제3조 (위원회) ① 체육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.

1. 체육위원회
 2. 체육부운영소위원회
 3. 체육부 발전기금(육성기금)운영소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임무) ① 체육부장은 체육부를 대표하고 체육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며 체육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② 행정직원은 체육부장을 보좌하며 감독, 코치 및 선수의 훈련 환경 여건 지원관리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③ 감독,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선수의 훈련계획
2. 훈련실시 및 감독
3. 선수의 체력 향상 및 기술지도
4. 신인선수 발굴에 관한 정보 파악보고
5. 경기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
6. 선수 학사지도관리 및 기타 소관 운동부의 제반업무

제5조(체육실기장학) ① 체육실기장학 인원은 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
② 체육실기장학은 「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」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매학기 평가하여 정한다.

제6조(표창 및 포상금 지급) 각 운동부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「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」에 의하여 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7조(제재조치) ① 각 운동부 선수가 「학생생활규정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동규정 및 「학생상별에관한규정」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운동부 선수가 기숙사 생활규칙 및 각 운동부별 규칙 위반 등 경미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, 체육부장이 조사하고 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체적으로 제재조치 할 수 있다.

제8조(운동부 입·퇴부) ① 운동부의 입·퇴부는 「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」의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매 학기 평가하여 결정한다.
② 체육부 소속 선수가 퇴부시에는 운동부 입·퇴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예산) ① 체육부 예산은 교비와 동문지원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편성한다.
② 체육부 예산운영에 대한 상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「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」 및 「체육부 발전기금(육성기금) 운영지침」을 둔다.

제10조(운영세칙) ① 본 규정 운용에 대한 상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「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」을 둔다.

② 본 규정 및 「체육부운영규정 시행지침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